

충청남도 매장문화재 관리실태 현황분석

이 훈(충남역사문화연구소 문화재연구부장)

I. 머리말

최근 충청남도의 문화재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1971년 공주 武寧王陵이 발굴조사 된 이후 각계의 관심이 모아져 추진되어 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주목되는데, 이 사업의 시행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성이 부족한 문화재사업의 추진과 급속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부재, 경제적 지원의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로 분류된다. 문화재 보호법 제 43조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는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고에서의 ‘매장문화재’란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를 통해서 보고 된 유형의 문화재로서 유물을 제외한 지정·비지정된 모든 유적을 말하며, 또한 선사·고분·성곽·요지·사지·기타 등 보편적인 분류방법으로 구분하고 지난 5년간(1996년~2001년)의 조사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분석의 진행은 먼저 각종 문화재조사보고서 등의 기본 자료를 토대로 충남 매장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고, 충남도내의 문화재 전문조사기관(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연구법인 등)의 조사실적(지표조사, 시굴·발굴조사를 기준으로)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조사성과 및 조사된 유적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현장보존, 이전복원, 기록보존 후 폐기)를 정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후 진행하고자 하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방안을 구상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충청남도 문화재 조사현황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충남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매장문화재는 약 2,000여건이다. 그러나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현재 확인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최근 개발과정에서 추진되는 문화재조사 결과 확인되는 유적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충남지역의 문화재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주, 부여를 비롯하여 각 시·군단위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던 『忠南地域의 文化遺蹟』(백제문화개발연구원)과 함께, 각 시·군에서 시·군지 및 문화유적총람이 간행되면서 활발한 조사성과를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각 시·군 단위의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면서 종합적인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조사는 대체로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각 대학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문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전·충남에서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표1>과 같다.

<표 1> 대전·충남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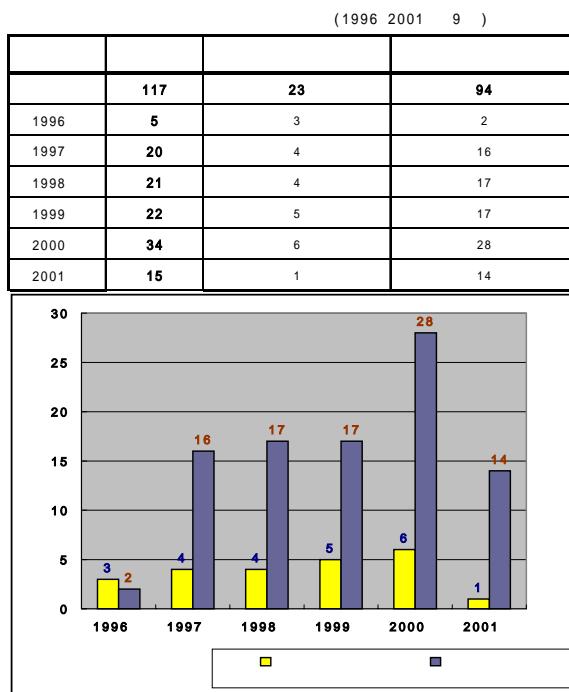
충남지역(9개)	대전지역(5개)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부여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공주대학교박물관	대전보건대학박물관
한서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백제문화박물관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선문대 역사학과 유적발굴조사단	
충남발전연구원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국립박물관 2개, 대학기관 8개, 국립연구소 및 전문재단법인 4개 : 총 14개	

1. 지표조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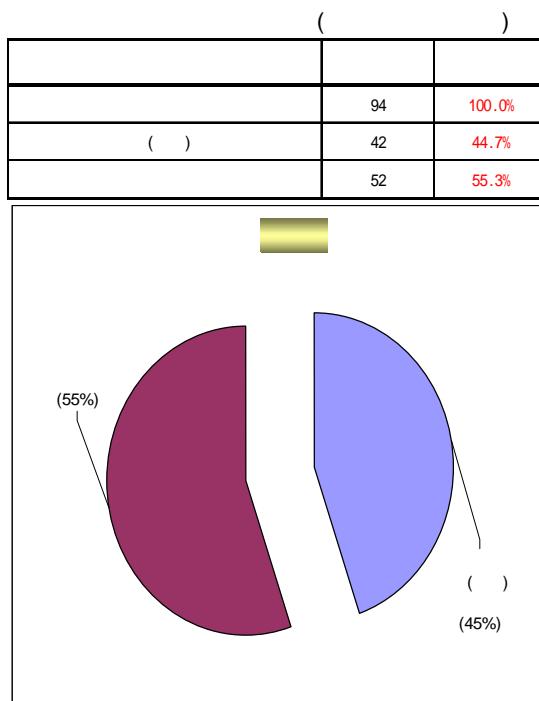
지표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학술지표조사와 개발에 따른 정밀지표조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과 같은 일반적인 고고, 역사, 민속 등의 자료를 총괄하는 학술목적의 지표조사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각종 건설사업을 위한 문화재조사의 일환으로 공사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학술연구 및 발굴조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2>에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현황은 학술조사에 비해 개발을 위한 조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후자는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굴·발굴조사로 이어지면서,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표3>.

<표 2> 최근 6년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표 3> 지표조사건의 후속조치 현황(학술지표조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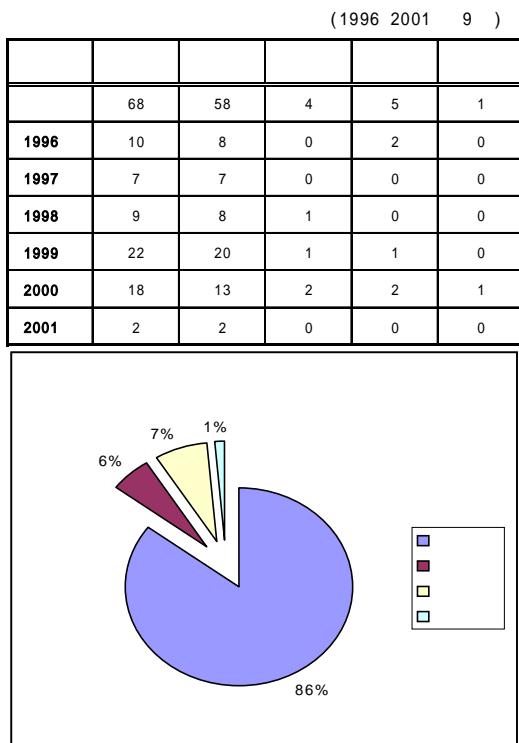
2. 발굴조사 현황

발굴조사는 크게 학술연구 또는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자료제공이 목적인 학술발굴조사와,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의 보존과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구체발굴조사로 구분할 수 있

다.

<표 4>를 살펴보면 순수 학술목적의 조사나 정비·복원을 위한 조사보다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도의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개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표 4> 최근 6년간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조사 현황(2001. 10월 현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1997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을 승인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를 전담하는 매장문화재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육성하여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술조사 등은 대학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살려 조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수유적이나 종합적인 결과를 필요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는 대학과 전문기관이 협동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문화재 보존관리현황

1.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현황

우리나라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정문화

재의 종류는 문화재 각각의 특징에 따른 것이며, 비슷한 형태의 문화재가 서로 다르게 지정되는 것은 역시 그 중요도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유물·유적 그리고 무형의 문화재가 공식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지정문화재로 선택되는 것은 그 대상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지정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의 측면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정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의 관리문제는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 각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실시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들도 개발 우선 논리에 밀려 특별한 보존대책 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현황(2001년 10월 현재)

총계	합계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합계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천안시	52	11	1	9	1	·	·	·	·	41	15	4	·	11	·	26		
공주시	118	38	16	17	5	·	·	·	·	80	52	29	3	18	2	28		
보령시	35	7	1	3	2	·	·	1	·	28	13	7	1	5	·	15		
아산시	49	14	1	4	3	·	·	·	6	35	13	2	1	7	3	22		
서산시	41	12	1	7	2	·	·	·	2	29	12	8	·	4	·	17		
논산시	79	11	·	6	2	·	·	1	·	2	68	41	22	1	15	3	27	
계룡출장소	7	·	·	·	·	·	·	·	·	7	2	2	·	·	·	5		
금산군	33	4	·	1	1	·	·	2	·	29	10	5	2	3	·	19		
연기군	21	3	·	2	·	·	·	1	·	18	9	3	·	6	·	9		
부여군	130	42	5	13	18	1	·	1	1	3	88	52	19	5	27	1	36	
서천군	33	8	·	2	1	·	·	2	2	1	25	13	1	5	7	·	12	
청양군	29	10	2	7	·	·	·	·	·	1	19	11	5	2	4	·	8	
홍성군	43	9	·	4	1	·	·	·	1	3	34	17	3	2	9	3	17	
예산군	61	12	1	5	2	·	·	1	·	3	49	21	10	1	10	·	28	
태안군	19	3	·	1	·	·	·	2	·	16	12	5	2	5	·	4		
당진군	28	8	·	4	·	·	·	1	2	1	20	12	3	·	9	·	8	

<표 5>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와 공주지역에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황에서도 확인하게 드러난다.

지정문화재는 지정주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으며, 또한 지정 주체에 따라 정부나 도의 재정 지원 아래 매년 정비·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정문화재들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 이는 물론 모든 지정문화재를 완벽하게 정비·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문화재 지정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대상 유적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나 철저한 고증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다⁷⁾. 이것은 조사기관 혹은 연구자들

7 百濟寺址로 비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水源寺址, 南穴寺址, 東穴寺址 등의 경우, 乾芝山城은 지표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함.

사이에 연구성과의 교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문화재에 대한 종합관리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를 보존관리체계에 직접 교류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적이나 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는 지정된 매장문화재와는 다르게 비지정된 매장문화재는 거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발굴조사되는 매장유적은 첫째,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어 현장에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존 경우 둘째, 유적의 보존가치가 공사의 중요성보다 낮아 다른 곳으로 유적 전체 혹은 일부를 이전·복원하는 경우 셋째, 유적을 기록보존으로 마무리하고 모두 공사 추진과정에서 파괴된다. 현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유적이 보고서 한권으로 남는 기록보존을 끝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중에는 최소한의 이전·복원이나 일부 현장보존이 필요한 유적들도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어서 발굴조사를 담당한 기관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유적보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장보존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전·복원 조치가 내려진 유적의 경우도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관심으로 그 보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시급히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에 발굴조사되어 사적 제433호로 지정된 公州 長善里 土室遺蹟처럼 발굴조사 - 현장보존조치 - 신속한 복구 - 사적 지정 - 정비복원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유적보존처리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련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모색한다면 매장문화재의 훼손과 파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2. 매장문화재 정비복원 현황

매장문화재의 관리에는 문화재를 남겨진 그대로 보존하는 것 외에, 정비·복원의 방법이 포함된다. 자체보존보다도 문화재 정비·복원은 더 많은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문화재정비사업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100건 이상의 정비사업에 200억~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중 사적과 도지정문화재의 정비·복원비로 집중 투자되고 있다<표 6>. 또한 지역적인 배분으로는 공주·부여에 집중되고 있는데 <표 7>, 이는 문화재의 분포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유적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충청남도 종별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 지원 현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비율(%)
국 보	1,971,142	570,000	656,685	231,427	470,000	3,899,254	3.0
보 물	3,326,305	1,542,399	1,370,451	2,255,708	2,083,000	10,577,863	8.8
사적	5,539,283	9,095,713	6,272,143	9,189,094	13,560,000	43,656,233	35.9
중요무형문화재	600,000	300,000		80,000		980,000	0.9
중요민속자료	504,628	389,100	482,931	303,555	1,380,000	3,060,214	2.6
도지정문화재	6,036,220	5,307,400	11,307,225	6,407,980	3,854,000	32,912,825	27.1
문화재자료	1,761,450	2,272,000	1,039,250	2,182,000	1,451,000	8,705,700	7.2
천연기념물	92,856	507,141	190,000	342,854	270,000	1,402,851	1.2
기타	2,000,250	2,906,000	7,760,800	2,966,987	501,000	16,135,037	13.3
계	21,832,134	22,889,753	29,079,485	23,959,605	23,569,000	121,329,977	100.0

<표 7> 충청남도 각 시·군의 연도별 문화재 정비사업 추이(()은 정비 건)

	1997년 (193)	1998년 (178)	1999년 (174)	2000년 (181)	2001년 (129)	계 (855)	전체비율 (%)
천안시	236,030	599,000	335,400	420,526	730,000	2,320,956	1.9
공주시	6,488,385	4,858,571	6,463,143	4,902,854	6,740,000	29,452,953	24.3
보령시	821,010	686,428	480,500	1,235,418	664,000	3,887,356	3.2
아산시	1,910,142	1,484,000	1,760,229	1,956,813	1,710,000	8,821,184	7.3
서산시	578,631	665,714	587,607	585,714	940,000	3,357,666	2.8
논산시	1,811,448	1,643,357	1,546,786	3,457,893	2,084,000	10,543,484	8.7
계룡출장소	200,000	64,000	1,308,357	180,000		1,752,357	1.4
금산군	776,315	592,856	788,125	660,428	398,000	3,215,724	2.6
연기군	228,030	330,000	446,000	540,000	284,000	1,828,030	1.5
부여군	3,636,837	6,335,714	10,770,622	5,531,825	6,222,000	32,496,998	26.8
서천군	1,360,713	1,185,714	510,429	400,114	290,000	3,746,970	3.1
청양군	350,000	402,000	795,329	316,856	646,000	2,510,185	2.0
홍성군	1,308,841	1,729,399	295,750	1,336,545	1,150,000	5,820,535	4.8
예산군	950,282	878,000	1,208,414	1,469,437	1,291,000	5,797,133	4.8
태안군	910,000	681,000	962,650	181,182	160,000	2,894,832	2.4
당진군	265,470	754,000	826,144	784,000	260,000	2,889,614	2.4
계	21,832,134	22,889,753	29,079,485	23,959,605	23,569,000	121,335,977	100

또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분야별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기초조사, 보상, 유적보수정비, 부대시설조성의 4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8>, 유적보수정비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초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거의 없는 실태이다.

<표 8> 충청남도 분야별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 집행 현황(1997~2001년)

구 분	50미만		50-100		100-200		200이상		계(단위:백만원)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총 계	353	8,825	201	15,075	144	21,600	155	31,000	853(100)	76,500(100)	
기초조사	1	25	2	150	2	300	3	600	8 (0.9)	1,075 (1.4)	
보상	5	125	15	1,125	19	2,850	37	7,400	76 (8.9)	11,500 (15.0)	
유적보수정비	309	7,725	170	12,750	110	16,500	79	15,800	668 (78.3)	52,775 (69.0)	
부대시설조성	38	950	14	1,050	13	1,950	36	7,200	101 (11.9)	11,150 (14.6)	

문화재 정비·복원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진 이면에는 이처럼 정밀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한 고증이나 체계적인 정비복원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행정기관의 근시 안적 태도에도 큰 원인이 있으며, 부실한 기초조사는 문화재의 정비복원 사업에 결정적인 약점을 만들게 되고, 후일 예산이 중복 집행되거나 과다 지출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여군에서 시·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산시에서도 200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차원에서 문화재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단위유적별 정비복원의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매장문화재 관리 현황

1) 매장문화재 관리의 법률적 검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조의 2항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재 지정제도에 의한 보호,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을 살펴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1년도 개정 문화재보호법령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일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2001.3.28 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2001. 9.8, 문화관광부령 제53호)에서 그 변화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표9>

<표 9> 2001년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구 분	개정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58조제2항	가지정 대상문화재 확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사유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 수용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82조	문화재사법에 대한 처벌 강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4	매장문화재 발굴전답기구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확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43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지표조사 실시구체화

이러한 법령의 보완은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매장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되면 현장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정문화재일지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복원시키도록 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시급한 정비보존 조치가 요구되는데도 오랜기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⁸⁾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에 대한 처리는 정비·복원에 대한 소요예산의 준비나 유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인 대책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유적의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여름의 홍수, 겨울의 동해를 견

8 공주 艇止山遺蹟, 長善里 土室遺蹟, 부여 鹽倉里 百濟古墳遺蹟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디어내기가 어려워 2~3년 정도 경과하면 유적의 본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 현장 보존되거나 사적 및 기념물 등으로 가지정된 시점부터 정비·복원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관련 긴급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고 보존조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관리 행정 및 조직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문화국의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 예술진흥, 문화재, 관광홍보, 관광개발의 5개의 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문화재계는 문화재담당의 사무관 1인과 6인의 계원 및 별정 5급의 전문위원 1인이 문화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원의 구성과 직위구조로서는 주어진 고유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차 문화재 관리정책수립 등의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각 시·군에도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문화재 및 지역문화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표 10>.

<표 10> 충청남도 문화재 담당 현황(2001. 10 현재)

	시·군별	담당과	담당계	직원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5(별1)
1	계룡출장소	총무과	예산	
2	천안시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	6(별1)
3	공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6
4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	4(별1)
5	아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재	3(별1)
6	서산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1(별1)
7	논산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2
8	금산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4
9	연기군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4(별1)
10	부여군	문화관광과	문화재	5(학1)
11	서천군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4(별1)
12	청양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2(별1)
13	홍성군	문화공보실	문화재	3(별1)
14	예산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	4(별1)
15	태안군	문화관광과	문화체육	5
16	당진군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5(별1)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 지표·시굴·발굴조사, 사적·지방문화재지정, 정비보존계획 등 다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는 행정업무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을 둔 시·군은 부여군의 학예연구사 1인을 제외하고는 없다. 별정직으로 1인씩을 두고 있

지만 모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연구직이 아니며, 공주 등 4개 시·군은 그나마도 두지 않고 행정과 건축직이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또한 순환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직제 및 인력구조는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할 문화재의 특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계획, 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한 활용계획 등 정책적 대안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고 다만 현상유지의 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문화재의 정비·복원사업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마저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관련 담당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화 행정직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고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와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 들어서 문화재는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문화적 자긍심이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충남지역은 최근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급증하고 있고,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과정에서 훼손, 멸실되어 가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문화재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중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유물과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만한 중요한 문화재가 확인된다면 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존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발과 문화재보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복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종합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일반 관리 대상의 문화재와 정비·복원 대상의 문화재를 구분하여 보다 중점적인 사업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복원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에 더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차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忠淸南道, 1991, 『文化遺蹟總覽』(城郭·官衙篇).

———, 1997, 『文化財大觀』.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 1990 / 1991 / 1992 / 1993 / 1995 / 1996 / 1997,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高麗大學校埋藏文化研究所, 1996, 『唐津郡 埋藏文化財 分布調查』.

國立文化財研究所, 1990외, 『전국문화유적발굴조사연표』(중보판).

———,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天安市.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扶餘郡.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 1999 /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公州市 / 保寧市 / 泰安郡.

忠南發展研究院, 1998 / 1999 /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瑞山市 / 論山市 / 舒川郡.

이남석, 1996,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1997,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이강승, 1997,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1997, 「문화재 지표조사의 시행현실과 문제점」,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 97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국립문화재연구소.

서정석, 1997, 「백제문화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 1999,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광주, 1996,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의 현황과 과제」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한국토지 공사.

김희태, 1991, 「일본의 문화재관리와 유적 보전」 『전남문화재』 4.

호남문화재연구원, 1999,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